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589호 2025. 1. 23.(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용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2호)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해산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3호)
-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해산 고시(예천군 고시 제2025-14호)

공 고

-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200호)
- 2025년 예천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계획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5-208호)
- 2025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단지 모집공고(예천군 공고 제2025-209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용문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기본계획 고시

예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문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기본계획에 「농어촌정비법」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 23.

예 천 군



1. 사업의 명칭: 용문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2. 사업의 목적

용문면 거점중심 공간에 대해 지역특성에 맞는 생활편익, 문화복지 등 기초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용문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국토균형발전에 기여

3. 사 업 비: 4,000백만원(국비 2,800 도비 280, 군비 920)

4. 주요 사업내용

- 기초생활기반확충 : 금당누리센터 조성
- 지역역량강화 : 교육·훈련

5. 사업자 : 예천군수

6.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23년~2027년(5년간)

7.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등의 명세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토지소유자	비 고
				공부상	편입		
1	상금곡리	604-1	전	1,077	1,077	김용분	
2	상금곡리	604-10	대	1,653	1,653	예천군	

8.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 농촌활력과(농촌개발팀 ☎054-650-7325) 비치된 기본계획서를 열람하여 확인 할 수 있음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해산 고시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287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로부터 주민합의체 해산신고서가 접수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9항에 따라 주민합의체 해산신고를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예 천 군



1. 주민합의체 개요

가. 명 칭 : 읍부리 287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나. 대 표 : 문창배

다. 사업시행구역 : 예천군 용궁면 읍부리 287, 288-6 (대지1,051㎡)

라. 사 업 기 간 : 2024.11.19. ~ 사업완료일

마. 건 축 계 획 : 2개동(지상4층),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2. 주민합의체 해산신고 처리일자 : 2025. 1. 21. 끝.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해산 고시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54-26번지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로부터 주민합의체 해산신고서가 접수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9항에 따라 주민합의체 해산신고를 처리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예 천 군



1. 주민합의체 개요

- 가. 명 칭 : 남본리 154-26 일원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
- 나. 대 표 : 김종구
- 다. 사업시행구역 :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154-25, 154-26, 154-32, 81-2, 81-6 (대지1,021㎡)
- 라. 사 업 기 간 : 2024.11.19. ~ 사업완료일
- 마. 건 축 계 획 : 2개동(지상4층), 다세대주택(도시형생활주택)

2. 주민합의체 해산신고 처리일자 : 2025. 1. 21. 끝.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예 천 군



1. 조례명 :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제정이유

예천군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3조)

- 예천군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그 밖에 예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체

나.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안 제5조)

-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대책 매년 수립·시행
- 목표, 기본방향, 산업재해 발생 현황, 산업재해 예방·감소대책, 산업안전보건 교육·홍보, 예산 등 포함하여 수립함

다.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7조)

- 사업장 지도 실시
- 정책 개발·연구 실시
-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 제도 개선사항 건의 등 수행
- 산업재해 예방 교육

4. 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ksw0827@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총무과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총무과(전화: 054-650-644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1. 예천군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2.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예천군 산업

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예천군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
4. 사업주,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
5.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6.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
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 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천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 체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

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
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

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공고 제2025-208호

2025년도 예천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계획 공고

관내 공동주택 입주민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이웃 간 상생하는
건실한 주거문화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23일

예 천 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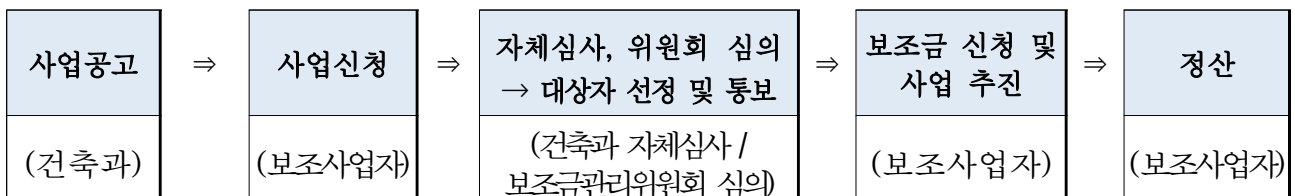
2025년도 예천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모 계획

I 사업 개요

- 지원근거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의2
- 지원대상 :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희망단지 ※ 미신청단지 우선지원
- 예산총액 : 50,000천원
 - 가. 최초 참여 단지 : 총 사업비의 10%이상 자부담
 - 나. 2회차 참여 단지 : 총 사업비의 20%이상 자부담
 - 다. 3회차 참여 단지 : 총 사업비의 30%이상 자부담
 - 라. 4회차 참여 단지 : 총 사업비의 40%이상 자부담
 - 마. 5회차 참여 단지 : 총 사업비의 50%이상 자부담※ 2024년도 우수단지로 선정된 단지는 자부담 비율 10% 경감
- 사업내용 : 단지 별 희망하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사업 유형	프로그램 예시
소통 / 주민화합	① 주민축제 ② 소통 및 의견 나누기 ③ 품앗이 및 문화교류 ④ 소식지 및 홈페이지 ⑤ 아파트 신문 발간
친환경 실천/체험	① 친환경제품만들기 ② 텃밭 가꾸기 ③ 녹색장터 ④ 에너지절약교육 / 생활용품공유 ⑤ 체험활동
교육 / 보육	① 취미교실 ② 반찬품앗이, 이유식 만들기 ③ 자녀교육 ④ 보육 / 공동육아
문화 강좌	① 운동, 건강교실(GX, 헬스, 요가) ② 어학교실(영어, 한문) ③ 음악교실 ④ 교양강좌
기타 활동	① 이웃돕기 ② 봉사활동 ③ 재능기부 ④ 입주민과의 소통의장 운영
혼 합	2개 이상의 프로그램 혼합

5. 추진절차



※ 정산 이후 내부 평가를 통해 최우수 단지를 선정하여 차년도 자부담 비율 10%경감
(평가 기준: [별지 제9호 서식]참고)

Ⅱ 사업 신청

1. 신청기간 : 2025. 1. 23.(목) ~ 2025. 3. 14.(금) 17:00 마감
2. 신청방법 : 보탬e(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3. 접수장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건축과 공동주택팀(☎054)650-6947)
4. 신청서류
 - 가. 공모사업 신청서 1부.
 - 나. 예천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 다. 사업계획서 1부.
 - 라.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 신고서 및 사업비 지원신청서 1부.
 - 마. 입주자대표회의록 1부.

※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신고 수리 및 자부담 방안에 대한 의결 내용 포함
5. 참고자료
 - 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 기준 1부.
 - 나. 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표 1부.

Ⅲ 사업 선정

1. 선정 절차
 - 가. 1차 심사 :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건축과 자체 검토
 - 나. 2차 심사 : 보조사업 선정 심사기준에 따른 군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2. 결과 발표 : 선정단지 개별통지(2025. 5월 예정)

Ⅳ 유의사항

1. 신청한 제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아래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환수조치 됨
 - 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나.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다.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4. 단지 당 단일의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및 사업 응모를 원칙으로 함

[별지 제1호 서식]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신청서

공모사업명		2025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사 업 개 요	신청단지	단 지 명		동 수	
		주 소		세 대 수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주요내용	
사 업 비	내 역	총 계		보조금	자부담
		천 원(100%)		천 원(%)	천 원(%)
연 락 처	성 명 (실무담당자)		주 소 (도로명주소)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FAX		
예천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체활성화단체장 : (인) 입주자대표회장 : (인) 관리사무소장 : (인)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신고서 1부. 3. 입주자대표회의록 1부.					

[별지 제2호 서식]

예천군 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개 인(단 체)명				회원수	
	소 재 지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사업내용	분 야					
	신청사업명					
	사업기간				장 소	
	총소요사업비				지원신청액	
예천군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예천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기타참고사항(단체일 경우 단체소개서) 등						

[별지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3. 사업내용

가. 사업기간 :

나. 사 업 량 :

다. 지원근거 :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의2

라. 주요내용 :

4. 기대효과 :

5. 집행계획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소 계				
	소 계				
	소 계				

※ [별지 제7호 서식]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기입 바람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체 활성화단체 구성(변경)신고서						공동체지원이사	입주자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 (변경)	단체의 명칭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주택		
		동, 호수			핸드폰		
	구성내용	구성목적					
		구성일시					
		구성인원					
		활동내용					
사업지원	사업내용	사업목적					
		사업대상					
		사업기간					
		추진방법					
		사업비					
		기대효과					
준수사항	○ 공동주택관리법 등 법령과 규약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고 미풍양속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기여를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추진한다. ○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비 신청과 지원, 지출 및 보고 등의 절차는 관리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구체적인 사업비의 사용 용도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또는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입주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 기업체로부터의 금전기부 등은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를 제한할 수 있음.						
별첨		회칙, 회원명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의결서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오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업비 지원 신청서					
신청단체명					
대표자	성명		전화 번호	자택	
	동, 호수			핸드폰	
신청 내용	신청 사업비				
	의견 및 특이사항				
준수사항		○ 사업비는 당해 단체의 목적달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에 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용용도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 지원된 비용을 유용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것으로 판명되는 등의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되며 이에 대한 비용을 반납하여야 한다.			
별첨		- 세부 사업계획서(관련자료 포함) - 의결서(사업비 지원 신청에 대한 총회 의결내용)			
상기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만일 준수사항을 어길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조치에 따를 것을 서약하며 사업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인) ○○○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체 활성화 사업 대상지 선정 평가표

신청 단지		사업명	
-------	--	-----	--

심사 항목	배 점	내 용			상세 배점	평가 점수
총 계	100					
취지 적합성	25	·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 가능한 사업 여부 ·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 향상 가능한 양질의 사업 여부			높음: 25 보통: 20 낮음: 15	
실행 가능성	25	· 응모 프로그램 및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 사업 목적 및 내용의 구체화 및 명확화 여부 · 책정 예산의 타당성 및 현실성 여부			높음: 25 보통: 20 낮음: 15	
주민 참여성	25	· 입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사업 여부 · 특정 연령층에 편중된 사업 지양 여부			높음: 25 보통: 20 낮음: 15	
사업 지속성	25	· 일회성, 단순 소비성 사업 지양 여부 · 장기적 및 지속적 규모로 확대 가능한 사업 여부			높음: 25 보통: 20 낮음: 15	
종합 의견						
지원 금액	신 청 액(천원)			부서 검토액(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별지 제7호 서식]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예산편성 기준

보조비목	편성 기준
- 홍보비 - 인쇄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실비정산 - 예시: 홍보물, 홍보용품, 현수막, 기념물
- 물품구입비 - 사무용품구입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실비정산 ※ 자산성 물품은 구매 불가(예시: 컴퓨터, TV 등)
- 단기임차료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등 임차 비용 - 실비정산
- 시외여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 가능 - 실비 정산 - 예시: 유류비, 주차비, 통행요금, 교통비 - 숙박비: 1인 1박 5만원 기준으로 편성
- 식비 - 간담회비	- 식비: 1인 1식 9천원 이내 편성 - 다과비: 1인 4천원 이내 편성 ※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다과비 또는 주류 구매로는 편성 불가 ※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승인을 받아 증액 가능
- 외래 강사료	- 지급단가: [별지 제8호 서식]참고 - 1인당 1일 최대 3시간만 인정(기본시간 1시간 + 초과시간 2시간) ※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월간 지급 강사료가 125,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후 지급
- 공연비	- 5인 이하: 50만원 - 6-10인 이하: 6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 월간 개인에게 지급 되는 금액이 125,000원 초과시 원천징수 후 지급 ※ 공연기획사와 거래시 부가세가 포함된 지급한도금액임
- 시설공사비	- 실비정산 - 예시: 공간 조성, 공연 무대 설치 ※ 행위허가, 신고대상이 아닌 건에 한함
- 체험비	- 실비정산 - 예시: 현장학습 입장료

☐ 보조금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예천군 관내 사용 원칙

※ 불가피한 경우: 금액의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나거나, 관내에서 해당 품목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 보조금 정산에 필요한 세부 증빙서류는 보조금 교부시 별도 안내

☐ 보조 비목에 없는 항목에 대한 지출의 경우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054-650-6947)

강사료 예산 편성 기준

비 목	등 급	대 상(전 · 현직)		지급한도액		비 고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강 사 비	특급 (전·현 직)	-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 대학총장(장관 차관급) - 국회의원 - 기초자치단체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장	- 대기업 회장 - 전직 공기업 대표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경상북도 사전협의)	300,000	200,000 (매시간)	
	1급 (전·현 직)	- 대학의 교수 - 판 · 검사 - 지방의회의원 - 언론인 -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4급 이상 공무원	- 변호사, 의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유명 예술인, 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실무경력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250,000	120,000 (매시간)	
	2급 (전·현 직)	- 대학 강사 등 겸임교수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5급 이하 공무원	-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등 전문직 종사자 - 원어민 어학 강사(외국에서 태어나거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동일어권 국가에서 20년 이상 체류하고 고등교육을 이수한 자) - 기타 전문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150,000	80,000 (매시간)	
	3급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 3년 이상 경력자	100,000	50,000 (매시간)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80,000	40,000	
	5급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해당 자격증 소지자 및 해당 분야의 1년 이상 경력자		60,000	30,000 (매시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최우수단지 선정 평가표

단 지 명			진행 사업명		
심사 항목	배 점	내 용		상세 배점	평가 점수
총 계	100				
주민 참여성	25	· 입주자등의 참여도 · 참여 유도(단지 내 행사 연계 등)		높음: 25 보통: 15 낮음: 5	
지역 활성화	20	· 예천군 관내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출 비율		60% 이상 : 20 50 ~ 59% : 15 40 ~ 49% : 10 30 ~ 39% : 5 29% 이하 : 0	
보조사업 관리	20	·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 여부 ·		우수 : 20 보통 : 10 미흡: 0	
단지내 협업	15	· 공동체 활성화 단체 등 2개 이상 단체 협업		우수 : 15 보통 : 10 미흡: 5	
입주자 대표회의 이수율	10	· 입주자대표회의 법정교육 이수율 기준		80 ~ 100% : 10 70 ~ 79% : 8 60 ~ 69% : 4 51 ~ 59% : 2 50% 이하 : 0	
단지 내 민원 여부	10	· 단지 내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관련 민원제기 여부(당해년도 발생민원 대상)			
사업 진행 민원제기	-30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인근 주민 및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 여부		최대 -30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대상단지 모집공고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2025년 1월 23일

예 천 군 수

1. 모집대상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공용시설물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공동주택단지
단, 5년 이내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제외

2. 모집기간 : 2025 01. 23. ~ 2023. 03. 14. 18:00까지

3. 지원금액 : 2025년 예산 범위 내에서 단지별 총 사업비의 일부 지원

4. 지원대상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 유지·보수
- 상·하수도시설의 유지·보수(단지 내 주도로에 매설된 시설)
- 재해가 우려되는 옹벽, 석축, 절개지 등의 보수
- 가로등, 보안등의 유지·보수
-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차단기의 보수·설치
- 장애인 편의시설의 보수·설치 및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개선
- 옥외 지상주차장의 유지보수, 지하주차장 비상벨 설치 및 재난 안전표지판 유지·보수
- 어린이놀이시설, 비영리 목적의 주민운동시설, 공동 화장실의 보수
-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자동 집하시설(크린넷) 친환경시설, 택배시설의 설치·개선 등 유지관리비
- 주민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앱(App)구축 운영
- 그 밖에 위해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시설

5. 지원결정

- 예천군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보조대상 및 지원기준의 심의·결정
- 공동주택의 노후 연수 및 입주세대수 등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 할 수 있음

6. 접 수 처 : 예천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 (☎054.650.6352)

7. 제출서류

- 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 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
- 다.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
- 라.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 마. 공법 및 공정표
- 바. 설명이 첨부된 현황사진

8. 안내사항

제출서류는 아래 첨부된 양식을 참조하여 주시고,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예천군청 건축과 공동주택팀(☎054.650.63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

신청자	공동주택명		동 수	
	주 소		세대수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준공일	

신 청 내 용

사업명	소요예산			사 업 내 용	비 고
	계	보조금액 (신청액)	자 체 부담액		

「예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관리주체

(인)

예천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본(단,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자가 당해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부.
2.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하여 작성된 내역서, 시공도면 포함) 1부.
3.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 비율 및 금액표 1부.
4. 공법 및 공정표 1부.
5. 설명이 첨부된 현황사진 제출(한글파일의 사진대지)

【견본】

사업계획서

1. 단지현황

- 아파트명 : ○○아파트
○ 위 치 : 예천군 읍.면 (도로명주소기입)
○ 단지현황 : 동 세대
○ 준공일자 : 19 . .

2. 사 업 명 :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아파트 ○○시설 보수공사)

3. 사업목적

- ○○○○년 준공된 노후 아파트로서 ○○시설이 노후 및 파손되어 사고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금회 ○○시설을 보수 및 교체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단지를 만들고자 합니다.

4. 소요예산 (단위 : 원)

구 분 공 종	합 계	보조금(00%)	자부담(00%)	비 고
				부과세 포함

5. 사업기간 : 20 . ~ 20 . (00일간)

붙임 : 내역서, 시공도면, 예금통장사본, 현황사진 등

【견본】

000아파트 입주자 동의서

경상북도(예천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신청을 위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1. . .

1. 대표자 선정에 대한 동의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19 . 00. 00.
- 주 소 : 경상북도 예천군 000아파트 동 호
- 연 락 처 : 010-

2. 관리비용 지원신청에 대한 동의

- 00아파트 00시설 보수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비의 00%를 지원 받고 우리 아파트에서 00%를 부담하여 보수함

세대수	1. 대표자 선정 동의결과			2. 관리비용 지원신청 동의결과		
	찬성	반대	동의율	찬성	반대	동의율
세대						

동(세대)							
호수	성명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1. 대표자 선정		2. 관리비용 지원신청	
				찬성	반대	찬성	반대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서명/인)

[illegible]

【견본】

예정공사비 견적서

※ 주의: 2개 업체이상 견적을 받아 낮은 가격을 첨부하여야 함(부가세 포함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

【견본】

보수대상 현황사진

○○아파트 전경사진

○○시설 노후 사진

【견본】

예정공정표

공 사 명	
공 법	
공 사 비	

[illegible]